

공공기관 규제 개혁

2014. 12.

연구총괄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평가팀장
참여연구자 하태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목 차

I. 서 론	7
II. 선행연구와 연구방향	9
1. 선행연구	9
가. 공공기관 규제의 개념 정의	9
나. 유사행정규제 분류 방안	10
2. 공공기관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상황	11
3. 기획재정부의 과제 검토 요청	12
4. 연구 방향	12
III. 공공기관의 규제 사례분석	14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14
가. 규제등록의 의의와 필요성	14
나. 공공기관 유사규제 등록의 필요성	14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 발굴 및 분류	16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의 특징 및 관리상의 유의점	31
2.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업	31
가. 규제현황(단위사업)	31
나. 규제유형	33
다. 소결	35
3.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업무	42
가. 접근방법	42
나. 소방산업기술원 규제 리스트	42

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사례분석 결과	49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사업	50
가. 접근방법	50
나.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규제 분류	51
다.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특성	58
라.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특성 및 함의	64
IV. 공공기관 규제 개선 사례분석 결과와 정책적 대안	66
1. 사례분석 결과	66
2. 정책적 대안	67
참고문헌	69

표목차

〈표 II-1〉 행정규제와 유사행정규제 구분	9
〈표 II-2〉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분류	10
〈표 III-1〉 공공기관 유사규제 분류를 위한 분석틀	17
〈표 III-2〉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중 유사규제	18
〈표 III-3〉 한국전력 규제 유형 분류	35
〈표 III-4〉 한국전력 규제 유형 분류 리스트	37
〈표 III-5〉 소방산업기술원: 규제 유형 분류	43
〈표 III-6〉 LH 유사규제 분류를 위한 분석틀	50
〈표 III-7〉 LH 규제 유형 분류	51
〈표 III-8〉 LH 규제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56
〈표 III-9〉 LH 규제 분류별 건수 및 비중	58
〈표 III-10〉 LH 규제 유형별 건수 및 비중	59
〈표 III-11〉 LH 사전·사후 규제별 건수 및 비중	60
〈표 III-12〉 LH 규제 권리제한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61
〈표 III-13〉 LH 의무부과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63

그림목차

[그림 Ⅲ-1] 규제 유형 분포	32
[그림 Ⅲ-2] LH 전체 규제 세부유형별 비중(0% 제외)	57
[그림 Ⅲ-3] LH 전체 규제 유형 분류 비중	58
[그림 Ⅲ-4] LH 전체 규제 유형 분류 비중(규제 아닌 것 제외)	59
[그림 Ⅲ-5] LH 규제 유형별 비중	60
[그림 Ⅲ-6] LH 전체 규제 중 사전·사후 비중	61
[그림 Ⅲ-7] LH 권리제한 세부유형별 규제 비중	62
[그림 Ⅲ-8] LH 의무부과 규제 세부유형별 비중(0% 제외)	64

I. 서론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제재함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 현 박근혜 정부도 전 정부 차원에서 행정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 사전심의 등을 통해 촘촘히 관리하고, 규제비용 총량관리, 네거티브 방식 확대, 규제일몰 적용 등 시스템적 규제관리 체계가 잘 정착되고 작동하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¹⁾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과제 발굴 및 개선실적으로 보면 각 부처의 법령 정비 및 규제개선과 지자체 및 일선기관의 현장집행과 자치법규 개선만을 추진하였고, 중앙행정기관 2013년도 등록규제 수는 15,269건임²⁾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대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이며,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의한 규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 법률적 위임과 정부의 위탁사무집행을 수행

1) 규제개혁위원회 <https://www.better.go.kr/fz/intro/RrcIntro.jsp>, 검색날짜 : 2014년 7월 1일

2)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2014. 3

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존재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규제 개념,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개선방안 마련 필요

II. 선행연구와 연구방향

1. 선행연구

가. 공공기관 규제의 개념 정의

- 규제 : 공공부문이 민간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 행정규제와 유사행정규제로 구분
 - 행정규제 : 규제를 정부가 집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재량권을 가지지 않고 집행
 - 예) 규제를 집행할 때 공공기관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 유사행정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가 아닌 규제 중 공공기관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에 재량권이 있는 경우
 - 예) 규제를 집행할 때 공공기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 숨은 규제는 유사행정규제 중 근거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

〈표 II-1〉 행정규제와 유사행정규제 구분

유형	근거법	재량권	분류	집행 주체	관리
행정규제	근거법 있음	국회	법	정부 집행	(국회)
		정부	시행령, 규칙, 고시		총리실
유사행정규제	근거법 있음	공공기관	내규	공공기관 집행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근거법 부재 (숨은 규제)				

* 주1 :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상 유사행정규제는 포함되지 않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포함하게끔 규제 정의를 하고 행정규제와 유사행정규제를 구분

* 주2 : 공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 정책자금 지원받는 조건 등도 유사행정규제에 해당.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 중 행정규제는 총리실 소관업무

나. 유사행정규제 분류 방안

- 사례분석 결과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분류는 이해영 외(2010)의 연구 틀과 분석방법 사용 가능
 - 검사·검증형 기관에 대해서는 “권리제한 - 사업수행 여부 - 사전 - 평가 인증” 분류를 “시험·검사 명칭 사용하는 게 보다 적합
 - 금융형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권리제한 - 사업수행 여부 - 사전 규제가 다수
 -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의무부과 - 행위적 의무 규제가 다수
 - 검사·검증형 공공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은 권리제한 규제가 다수

〈표 II-2〉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분류

(단위: %)

유형			중진공 (정책금융)	한전 (배전)	소방산업 기술원(검사)	NH	
권리 제한	사업 수행 여부	사전	기준 설정	5건(16.7)	10(6.1)		3(7.1)
			사전제출 서류	7건(23.3)	10(6.1)	3(20)	9(21.4)
			자격 조건	8건(26.7)	9(5.5)	2(13.3)	12(28.6)
			평가 인증 (시험·검사)	6건(20.0)	1(0.6)	1(6.7)	4(9.5)
			허가		12(7.4)		
	사후	취소·철회	1건(3.3)	7(4.3)	2(13.3)		
		검사		3(1.8)		1(2.4)	
	사업 내용 제한	사전	가격 설정				
			권리 제한	1건(3.3)	2(1.2)	(6.7)	1(2.4)
		사후	이용 제한			3(20)	
관리 감독			18(11.0)		4(9.5)		
의무 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교육		6(3.7)		
			금지		1(0.6)		
			신고	2건(6.7)	1(0.6)		
			행위 의무		20(12.3)		7(16.7)
	사후	보고		29(17.8)	1(6.7)		
		자료 제출		27(16.6)			

〈표 II-2〉의 계속

유 형			중진공 (정책금융)	한전 (배전)	소방산업 기술원(검사)	NH	
의무 부과	금전적 의무	사전	보험		1(0.6)		1(2.4)
		사후	책임		3(1.8)		
	부가 요금			2(1.2)			
	부담금			1(0.6)	1(6.7)		
	수수료			1(6.7)			
계			30	163	15	42	

* 주 : 이해영 외, 『공공기관 유사 행정 규제 정비방안』, 국무총리실, 2010, p.24 의 연구들을 수정하여 활용

2. 공공기관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상황

- 2014년 7월 2일 : 전문가 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체)
 - 참석자 :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이원희, 경영평가팀장 라영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김주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권혁준
- 2014년 7월 10일 : 전문가 자문회의(기재부 참석) - TF 구성, 공공기관 규제 유형 분류와 시스템 도입방안
 - 참석자 :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과장 우해영,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팀장 라영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김주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권혁준
- 2014년 7월 17일 : 전문가 자문회의(기재부,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실장) - 외부전문가 1:1 매칭으로 분석, 8월 중순까지 기관별 분석 완료
 - 참석자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우해영,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팀장 라영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김주찬, 이해영,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이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초실장 김양수, 한국전력공사 법무실장 정홍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의지소경영실장 박노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초실장 박영기

- 2014년 7월 30일 공공기관 실무자 참석 자문회의(외부전문가, 공공기관 실무자)
 - ① 일정 : 2014년 8월 15일까지 개별팀 1차 작업 완료
 - ② 분석 과정 : 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규제를 전문가가 판단
 - ③ 팀 구성
 - 이혜영 - 소방산업기술원 : 검사
 - 이혁우 - 중진공 : 정책자금
 - 김성준 - 한전 : 배전
 - 최성락 - LH : 행복주택

3. 기획재정부의 과제 검토 요청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규제 개념을 확정하고 확정된 규제의 분류방안·사후 규제관리체계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
 - 공공기관 사례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의 개념 및 분류 방안을 제시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

4. 연구 방향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규제현황 분석
 - 공기업(한전, LH), 준정부기관(중진공, 소방산업기술원)의 4개 공공기관 규제사례를 일부 사업에 한해서 내부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상 공공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례조사

- 공공기관 전체로 규제 현황 파악(또는 등록)을 확대할 때, 용어, 분류기준 및 유형, 적용범위 등 기준, 적용 대상기관과 관리방안, 실행 가이드라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향후 기획재정부는 세부적인 공공기관의 규제관리 정책 방향과 대책 마련
 - 규제개선 가이드라인 마련(규제 등록, 일몰제, 점수총량제 실시 방안 등)
 - 알리오 시스템에 공공기관 주요 사업에 규제를 유형별로 등록
 - 기존 규제 감축 계획
 - 규제 감축 결과 평가·보고

Ⅲ. 공공기관의 규제 사례분석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가. 규제등록의 의의와 필요성

1) 규제등록의 개념

- 정부의 규제등록은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포에 그 근거를 둬
 -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규제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신설에 따라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음
- 정부는 동 법에 의해 규제등록을 기본으로 규제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정부규제 관리의 일차적인 모수로 작용하는 등 규제관리체계의 기반이 되고 있음

나. 공공기관 유사규제 등록의 필요성

-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관리의 필요성은 존재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규제의 주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은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음

- 공공기관의 경우, 성격상 정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법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등 그 성격이 공적인 성격이 높음
-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제정, 적용하고 있는 각종 지침, 내규, 사규, 요령 등은 공공기관이 민간(소비자 및 거래사업체)의 경제주체와 상호작용하는 지침으로 작동하는 근거가 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정부규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공공기관과 상호작용하는 민간주체의 경우, 특정 공공기관과 상호 작용함에 있어서 이들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기준을 준수할 부담을 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담이 통상의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이나 부담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제는 이런 규제적 성격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그 성격상 독점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개선할 유인이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민간의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적 부담을 갖게 됨
- 이런 공공기관의 유사규제의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정부규제 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특히 규제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유사규제의 현황과 수준,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규제등록은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에 해당됨에도 이것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관리를 위한 등록제도의 실시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부규칙 중 “중소기업 용자사업 요령” 중 유사규제적 성격을 갖는 조항을 발굴하여 이를 이혜영 외(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유사규제 분류 분석틀에 따라 그 특징을 제시하려는 데 있음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 발굴 및 분류

1) 규제발굴과 분류를 위한 틀

가) 유사규제의 개념

- 이해영 외(2010)³⁾에 따르면 유사행정규제는 공공기관의 정관, 규정, 약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나 회원 등 피규제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권리를 제약하는 규제적 속성을 가진 것임
- 유사행정규제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이혁우(2009)에 의하면 지원조건 역시 규제로 분류함

나) 유사규제의 분류

- 이해영 외(2010)은 유사규제를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로 크게 두 범주로 대분류 한 후, 각각에 대해 아래 <표 Ⅲ-1>과 같은 세부분류틀을 제시함

3) 이해영 외, 『공공기관 유사 행정 규제 정비방안』, 국무총리실, 2010. p.5

〈표 III-1〉 공공기관 유사규제 분류를 위한 분석틀

유 형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기준 설정	
			사전제출 서류	
			자격 조건	
			평가 인증	
			허가	
	사업내용 제한	사후	취소·철회	
			검사	
			가격 설정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교육	
			금지	
			신고	
			행위 의무	
	금전적 의무	사후	사후	보고
				자료 제출
				보험
				책임
금전적 의무	사후	사후	부가 요금	
			부담금	
			수수료	
			수수료	

출처 : 이해영 외, 『공공기관 유사 행정 규제 정비방안』, 국무총리실, 2010, p.24

2) 중소기업진흥공단 유사규제 발굴 및 분류

가) 규제 발굴 및 분류의 대상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지침 중 “중소기업 용자사업 요령”을 대상으로 분석함. 동 요령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용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임

나) 요령 중 유사규제 발굴 및 분류표

- 중소기업 용자사업 요령 중 유사규제는 권리제한 중 사업수행 여부에 관련된 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사전제출서류, 자격조건이 대부분을 차지함
- 그 외 의무부과 중 행위적 의무가 있음. 특히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행위의무 부과가 발견됨

〈표 Ⅲ-2〉 중소기업 용자사업 요령 중 유사규제

유 형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기준 설정	제3조 제33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	
			사전제출 서류	제4조 제3호, 제4호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50조 제3항	
			자격 조건	제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항	
			평가 인증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4조	
			허가		
			사후	취소철회	제52조 제1항
	사업내용 제한	사후	사전	가격 설정	
			사후	권리 제한	제53조 제3항
				이용 제한	
				관리 감독	

〈표 III-2〉의 계속

유 형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교육	
			금지	
			신고	제49조 제50조
			행위 의무	
		사후	보고	
			자료 제출	
	금전적 의무	사전	보험	
			사후	책임
		부가 요금		
		부담금		
수수료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용자사업 요령』, 2014

다) 요령 중 유사규제에 대한 상세내용⁴⁾

(1) 기준설정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기업을 말한다.
2. “북한진출기업”은 위탁가공교역, 합작 및 합영투자방식 등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말한다.(단, 단순물자교역은 제외)
3. “예비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용자사업 요령 중 유사 행정 규제 부분만을 발췌한 것임

4. “기술이전”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는 중소기업이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양산단계의 기업활동을 말한다.
6.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은 국내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기술을 말한다.(단, 2006년 9월 30일 이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확정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7. “업력(사업기간)”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일반기업”은 사업기간 3년 이상 기업으로서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자산총계가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9. “소자산기업”은 사업기간 3년 이상 기업으로서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자산총계가 1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10. “회전한도”는 수출금융지원사업, 재창업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의 단기회전금융으로 융자할 수 있는 잔액기준 최대 대출금액을 말한다.
11. “한도조정기준일”은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마지막 일자를 말한다.

제33조(기업평가등급의 산정) ① 제19조의2 제2항 및 제23조 제5항에 의한 기술사업성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종합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소공인을 제외한 사업기간 3년 미만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기술사업성등급에 의한 기업평가등급을 산출한다. <개정 2012.1.17, 2013.1.14.>

② 기업평가등급은 아래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2.1.17, 2013.1.14>

등급	기업 평가 등급	소공인 기업 평가 등급	등급정의	비고
1등급	SA+	MA	기술성과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여 사업부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음	매우 우량
	SA			
2등급	SB+	MB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여 사업부실화 가능성이 적음	양호
	SB			
	SB-			
3등급	SC+	MC+	현재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보통수준이고 미래성장 가능성도 보통수준이며,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불안한 요소가 있음	보통
	SC	MC		
	SC-			
4등급	SD+	MD	현재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고 미래성장 가능성도 보통 이하 수준으로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한 요소가 있음	보통 이하
	SD			
	SD-			
5등급	SE+	ME	기술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미래성장가능성도 거의 없는 편으로, 사업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위험
	SE			

제38조(융자결정기준) 자금별 융자결정 여부는 제33조에 의한 기업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에서 정한 기준등급 이상인 기업을 융자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1.14>

제45조(대출 기한) ① 각 자금별 대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1.17.>

구 분	대 출 기 한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무역조 정지원기업 대상 용자 포함),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기간 내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등에 설치기간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설치 종료일을 대출기한으로 할 수 있다.
2. 긴급경영안정사업, 소공인특화자금	가.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삭제 2013.1.14)) 나. 기간 내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수출계약이 발생하지 않는 등 바로 약정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하여 약정체결할 수 있다.
4.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설 2013.1.14>	가.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기간 내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대출기간의 조정) ① 규정 제5조에 따른 직접대출 신용대출기간
 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다만, 개발기술사업
 화자금, 재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업종전환 유형의 사업전환자금
 및 청년전용창업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2. 시설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다만, 재창업자금은 8
 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복합금융방식에 의한 신용대출
 기간은 중소기업 투융자 복합금융사업 요령에 따른다.
- ② 임차보증금, 중고설비(사업장 확보자금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정보지원시설, 금형제작비용 융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이내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업체의 용자기간은 유예기간 만료일로 한다.

④ 동산담보 대출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구분 없이 기계기구는 4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재고자산은 1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매출채권은 120일 이내(만기 일시상환), 특허는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로 한다.

(2) 사전제출서류

제4조(용자대상 확인방법) 용자공고에서 정한 용자대상의 세부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 제2호의 북한진출기업 확인은 통일부의 협력사업승인서로 한다. 다만, 대북위탁가공교역의 경우에는 북한과 체결한 의향서, 합의서, 계약서 등 교역추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4.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중 경영혁신 추진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신청) ① 규정 제7조의 건강진단 신청서는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사업별 용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재해 중소기업 : 별지 제3의2호서식
2. 청년전용창업자금 : 별지 제3의3호서식
3. 소공인특화자금 : 별지 제3의4호서식
4.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5. 사업전환자금 : 별지 제6호서식
6. 무역조정기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③ 제1항의 건강진단 신청기업이 정책자금 용자를 하고자 할 때는 <별

지 제3호서식)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사) ① 현장실사 시 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북한진출기업 및 협동화사업을 통한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 확인으로 현장실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예비창업자 용자결정 통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통보받은 예비창업자는 가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진공은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용자결정을 정식으로 통보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2. 시설자금 용자지원의 경우 견적서, 카다로그 등 관련서류

제50조(변경승인) ③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변경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격조건

제4조(용자대상 확인방법) 용자공고에서 정한 용자대상의 세부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긴급경영안정사업 및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의 원부자재 구입자금 용자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하며, 제조업 전업률은 최근 결산연도 총매출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 또는 신청

일 현재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총매출액 중 제조업에 의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1.14>

제9조(동일기업집단) ① 동일기업집단 간 사업장 매매 및 건축, 시설 구입, 제조판매 권리의 양수 등의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은 용자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동일기업집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기업과 개인기업 :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개인기업의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법인의 출자 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법인기업과 법인기업 :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주주 지분의 합이 각각 3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용자범위) ③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와 관련된 <별표1>의 중점 지원대상 금형, 일반 금형(단위품목당 5백만원 이상에 한함), 신규 투자시설(또는 라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형 및 치공구 구입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중고금형 구입자금은 용자 제외한다.

제13조(신청의 제한) 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1.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용자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3. 용자결정자금을 전액 실효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④ 신청일 현재 기 용자결정자금에 대하여 사업추진중인 기업으로서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일부 금액실효는 제외)은 신청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본지부장이 해당기업으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상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2. 용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자금소요 계획이 있는 경우

(4) 평가인증

제16조의3(청년전용창업자금의 사업타당성평가)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일정 교육 이수 등으로 재창업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재창업자에 대한 재창업자금의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개정 2012.6.25, 2013.1.14>

제19조(기업평가) ① 기업평가는 기술사업 경쟁력 및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평가등급 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2.1.17.>

② 기업평가는 제27조 신용위험평가모형에 의한 신용위험평가 및 제28조 기술사업성평가모형에 의한 기술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1.17.>

③ 기업평가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한 서류심사 외에 제17조에 의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④ 소공인 평가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13.1.14.>

제19조의2(기업평가의 신용위험평가)

① 신용위험평가는 계량화가 가능한 정보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며,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모형, 대표자모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신용위험평가는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모형 및 대표자모형의 평가항목에 의거 산출된 평가점수에 따라 CR1~CR6의 신용위험등급으로 표시한다.

③ 신용위험평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4.>

일반 기업	3년 이상 재무평가기업	외감	업종별 재무평가	계량 비재무모형 1	-
		일반			대표자모형 1
		소자산			
	3년 이상 재무평가생략기업	-	계량 비재무모형 2	대표자모형 2	
3년 미만	-				
예비창업자	-				
소공인	3년 이상	-	계량 비재무모형	대표자모형	
	3년 미만	-	계량 비재무모형	대표자모형	

[본조신설, 2012.1.17.]

제20조(기업평가의 재무평가) ① 재무평가는 최근 2개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부 회계감사에 의해 전기 결산 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평가를 생략한다.

1. 사업기간 3년 미만 기업
2. 예비창업자
3.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4.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상이하여 재무제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2.1.17>

제23조(기업평가의 기술사업성평가) ① 기술사업성평가는 현장실사 시 기술사업성평가기준에 따라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삭제 2012.1.17.>

③ 기술사업성평가는 심사난이도에 따라 약식심사, 표준심사로 구분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구분	약식심사	표준심사	심층심사
조사사항	조사사항 작성	조사사항 작성	<삭제 2012.1.17>
평가의견서	종합의견 작성	항목별 세부의견 및 종합의견 작성	<삭제 2012.1.17>

④ <삭제 2012.1.17>

⑤ 기술사업성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 산출된 평가점수에 따라 J1~J6의 기술사업성등급으로 표시한다. 점수는 평가항목별로 6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이상, 보통이하, 다소미흡, 미흡)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1.0, 0.8, 0.6, 0.4, 0.2, 0.0을 곱한 수치로 산출된다. 다만, 소공인 평가는 5단계(양호, 보통이상, 보통, 보통이하, 미흡)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1.0, 0.8, 0.6, 0.4, 0.2를 곱한 수치로 산출된다. <개정 2013.1.14.>

제24조(업종추가 또는 전환기업에 대한 기업평가) 사업전환계획승인 기업의 재무평가는 주된 업종으로 평가하고, 기술사업성평가는 추가 또는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2.6.25.>

(5) 취소, 철회

제52조(융자결정 취소 및 대출금 조기회수) ① 융자결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융자결정업체가 신청 시 제출하였던 서류가 동 업체의 실제현황과 상이하고 그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세금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4.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용자결정액이 전액 실효된 자
6.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7.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사업전환계획의 중단, 취소 및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용자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자
8.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9.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리제한

제53조(사후관리 및 종합지원) ③ 용자업체 중에서 표본업체를 추출하여 사업계획의 정상적 이행 여부, 용자금의 정해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용자받았거나 용자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자금 조기회수
2. 향후 3년간 용자대상에서 제외

(7) 신고

제49조(변경신고) 용자결정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공장, 본점 등) 소재지
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함)
4. 최대출자자 변경
5. 그 밖에 기업현황의 중대한 변경사항

제50조(변경승인) ① 용자결정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및 법인전환
2. 용자시설 및 대출취급기관의 변경 등
3. 그 밖에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변경승인 신청내용이 사업목적 및 다음 변경승인기준에 부합될 경우 당초 용자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의 변경승인 시에는 신청기업이 직접대출 지원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변경사항	변경승인 기준
1.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 나. 기존 개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대표로의 대표자 변경 다. 기존 개인기업의 공동대표 중 1인을 포함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말일부터 소급하여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자본금 이상일 것. 다만, 신설법인이 기존의 개인기업의 업종을 영위하고 중진공용자시설을 현물출자받거나 양수하여 계속 사용하는 등 당초 용자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최대주주일 것 (친족지분 포함) 다. 개인기업을 폐업시킬 것
3. 용자시설(다만 은행에 변경위임 한 사항은 제외)의 변경	기술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당초 용자결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자결정액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규격, 수량, 제작업체, 소요금액의 변경은 용자취급은행이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4. 용자취급은행의 변경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의 특징 및 관리상의 유의점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원자격의 결정, 지원을 위한 절차적 기준, 정책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점검과 관련된 유사규제로 중소기업 용자사업 요령이 설계됨
- 권리제한에서, 사업수행 여부와 관련된 사전적 유사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이는 용자사업의 수행에 따라 사전적으로 용자대상을 선별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제출을 받으며,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평가인증을 하는 중소기업 용자사업의 특징에 기인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 중,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제3조의 정의에 규정된 내용 중, 업력, 일반기업, 소자산기업, 회전한도와 같은 정책자금 대상의 한정범위, 정책자금 용자의 한도, 제4조의 용자대상의 확인방법 중 기술권리의 기업 및 법인 보유 조건, 긴급경영안정사업 및 경영안정자금 용자 대상에서 제조업 전업률 30% 조건, 제9조 동일기업집단, 제11조 용자범위 등임. 이들은 정부의 재정상황, 중소기업의 특징과 금융수요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용자대상의 선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그 외 서류제출 간소화, 기업평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한 새로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설계될 때마다 요령의 개선이 필요함

2.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업

가. 규제현황(단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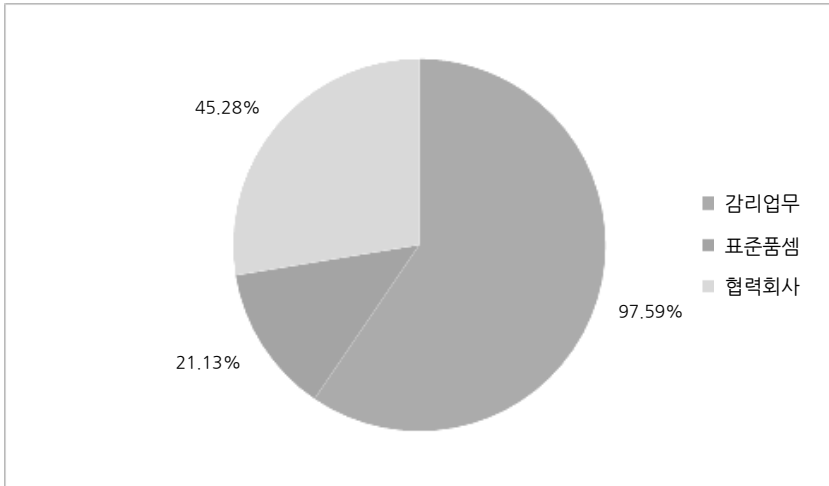
- 한전의 배전업무 관련 규제는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선

정하여 구성

- 한전의 배전업무와 관련되어 규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총 163건으로 조사됨
- 각 수행기준 및 규정의 규제 건수는 아래와 같음
 -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총 97건으로 전체 배전업무 관련 규제 163건 중 59.51%를 차지함
 -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총 21건으로, 배전업무 관련 규제의 12.88%를 구성함
 -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총 45건으로, 배전업무 관련 규제의 27.61%를 차지함

[그림 III-1] 규제 유형 분포

(단위: 건, %)



자료 :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2014. 한국전력공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2014.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2014.

- 배전업무와 관련된 규제 유형은 총 22개 유형 중 19개 유형을 확인
- 한전의 배전업무 관련 규제는 기존 유형 총 22개 중 19개 영역에서 발견되었으나, 권리제한-사업내용제한-사후-가격 설정 규제, 권리제

한-사업내용제한-사후-이용제한 규제와 의무부과-금전적 의무-사후-수수료 규제의 3개 규제 유형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지 않음

-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총 16개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기준유형 규제 중 4, 19, 20 유형의 규제가 발견되지 않음

-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은 총 8개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3, 4, 5, 6, 9, 12, 13, 14, 16, 18, 21 규제 유형이 없음

-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총 14개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기준유형 규제 중 9, 13, 14, 18, 21 규제 유형이 없음

나. 규제유형

1) 전체 규제

- 규제 분류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규제는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후규제 중 보고규제, 의무부과 규제 중 사후규제인 자료제출 규제,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규제인 행위 의무 규제의 순으로 나타남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후규제 중 보고규제는 전체 163건의 규제 중 17.79%인 29건이 발견됨
- 의무부과 규제 중 사후규제인 자료제출 규제는 전체 규제 중 12.27%인 20건이 발견됨.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규제인 행위 의무 규제는 전체 규제 중 11.04%인 18건이 발견됨

2) 업무별 규제

가)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규제는 총 97건이며, 의무부과-행위적 의무-보고규제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분석됨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보고규제는 총 28건으로 전체 97건 규제 중 28건으로 28.87%를 차지함
 - 다음으로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후-자료제출 규제가 16건으로 16.49%를 구성하고 있음

나)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과 관련된 규제는 총 21건으로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행위 의무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행위 의무 규제는 총 6건으로 전체 21건 중 28.57%를 차지함.
 - 권리제한-사업수행여부-사전-사전제출 서류 규제는 총 4건으로 19.05%를 구성하고 있음

다)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총 45건으로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행위 의무 규제,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자료 제출 규제가 가장 많은 규제 유형을 차지함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행위 의무 규제와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자료 제출 규제는 전체 45건 중 각각 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19.05%의 구성비를 가짐

〈표 III-3〉 한국전력 규제 유형 분류

(단위: 건)

규제 유형	1	2	3	4	5	6	7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총합계
감리 업무	2	5	4		10	6	1	2	11	2	1	1	6	28	16	1			1	97
표준 품셈	2	4					1		3				6		3		1	1		21
협력 회사	6	1	5	1	2	1	1		4	4			8	1	8		2	1		45
총합계	10	10	9	1	12	7	3	2	18	6	1	1	20	29	27	1	3	2	1	163

자료 :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2014. 한국전력공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2014.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2014.

주: 규제 건수 상위 3개 유형은 음영 표시함

다. 소결

- 각 업무별 규제 중 상위 규제는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와 관련된 규제에 집중되어 있음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와 관련된 규제는 총 84건으로 전체 규제의 51.5%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후 규제의 경우 56건으로 전체 규제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위적 의무 규제 유형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66.6%를 구성하고 있음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후-자료 제출 규제는 각 업무별 상위 규제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전-행위의무 규제와 권리제한-사업내용제한-사후-관리감독 규제의 경우에는 2개 업무 영역에서 공통된 상위규제로 파악됨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전의 배전업무 관련 규제는 시장 진입을 저해하기보다는 업무처리절차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고 및 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제는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전의 업무상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의 시공을 막아 일관된 품질의 배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의무부과 규제가 보고와 자료제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조직이 문제 상황 발생 시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자료제출의 경우 문서 작업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부 조직을 관리하기에 편리할 수도 있으나, 문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오히려 서비스 품질 향상, 시공 품질의 향상과는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많다는 점은 한전 업무 수행이 창의적이고 개선된 방향을 찾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전체 규제 중 12.27%의 규제가 행위 의무 규제로 구성되어 있음
 - 안전이나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업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근무자들은 오히려 창의적인 업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유인을 잃게 됨
 - 이는 한전 등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참고〉

〈표 III-4〉 한국전력 규제 유형 분류 리스트

번호	작업명	업무규정 페이지	규제 주제	규제유형
1	감리업무	22	부실 감리 벌점부과	11
2	감리업무	2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6
3	감리업무	24	계약자의 계약의무 준수	15
4	감리업무	24	공제가입	18
5	감리업무	24	공제가입증서 제출	2
6	감리업무	33	감리착수 신고서 제출	2
7	감리업무	34	감리원 변경의 승인	5
8	감리업무	34	감리원 교체의 승인	5
9	감리업무	34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5
10	감리업무	34	감리원배치변경신고	14
11	감리업무	35	감리원 업무연락처 보고	16
12	감리업무	35	감리원 보고의무	16
13	감리업무	35	내부자료 반출 승인	5
14	감리업무	36	착공신고서 검토 및 제출	17
15	감리업무	37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제출	2
16	감리업무	37	공급자 품질메뉴얼 제출	2
17	감리업무	38	현장 실사 및 보고	16
18	감리업무	41	하도급 적정성 여부 검토, 제출	17
19	감리업무	44	감리원 배치계획의 조정, 승인	5
20	감리업무	44	시급 업무의 검토 및 보고	16
21	감리업무	45	발주자 보고사항	16
22	감리업무	46	공정현황 보고	16
23	감리업무	46	보고를 요하는 중요사항	16
24	감리업무	46	현장 정기교육 실시	12
25	감리업무	47	책임감리원의 교육 범위	12
26	감리업무	47	부적절 작업원 보고	16
27	감리업무	47	기술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고	16
28	감리업무	48	중대 민원사항의 검토 및 보고	16
29	감리업무	48	작업 인원의 교체 요청 및 보고	16
30	감리업무	50	장비, 인원변경의 승인	5
31	감리업무	54	작업개시 절차 및 승인요청	5
32	감리업무	56	중요 기술검토의 서면 제출	17

〈표 III-4〉의 계속

번호	작업명	업무규정 페이지	규제 주제	규제유형
33	감리업무	56	공사업체조달자재 시험비용 부담	21
34	감리업무	57	납품자재 확인의무	7
35	감리업무	57	과적차량 반입 금지	13
36	감리업무	58	대체사용 승인 요청	5
37	감리업무	58	지장물 철거 확인 및 보고	16
38	감리업무	58	지장물 발견 보고	16
39	감리업무	58	응급조치 및 신속보고	16
40	감리업무	59	공사중지 등에 대한 보고	16
41	감리업무	61	현장 정리 감독	15
42	감리업무	61	설계변경에 대한 보고	16
43	감리업무	61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및 제출	17
44	감리업무	62	기술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보고	16
45	감리업무	62	현장실정보고에대한처리	16
46	감리업무	62	긴급현장실정보고 의무	16
47	감리업무	63	설계변경의 절차 및 서류제출	17
48	감리업무	63	경미한 시공변경의 서면보고	16
49	감리업무	63	계약금액 조정의 검토 및 제출	17
50	감리업무	64	공정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	17
51	감리업무	65	주간단위 공정의 검토, 확인	15
52	감리업무	66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의 수록, 보고	16
53	감리업무	66	수정공정계획의 검토 및 보고	16
54	감리업무	66	수정목표 종료일 준수 조치	16
55	감리업무	66	준공연기 요청의 검토 및 의견제출	16
56	감리업무	69	안전사고의 보고	16
57	감리업무	69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의 기록, 제출	17
58	감리업무	71	사고발생 대응조치 및 보고	16
59	감리업무	72	시험절차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17
60	감리업무	72	발주자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 검토	15
61	감리업무	72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17
62	감리업무	75	기성검사를 위한 보고	16
63	감리업무	77	기성검사서의 작성 및 통보	15
64	감리업무	77	공사업체의준공검제출	17
65	감리업무	78	준공도면 검토 및 제출	17

〈표 III-4〉의 계속

번호	작업명	업무규정 페이지	규제 주제	규제유형
66	감리업무	79	준공검사의 확인 및 검사결과 제출	17
67	감리업무	79	준공검사원의 접수 보고	16
68	감리업무	80	준공검사보고 제출 및 기한	15
69	감리업무	81	감리용역 최종보고서의 제출	17
70	감리업무	82	공사감리완료필증 제출	17
71	감리업무	84	검측업무 수행 승인 요청	5
72	감리업무	90	기록사진의 제출	17
73	감리업무	128	감리원 배치 기준	1
74	감리업무	128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승인	5
75	감리업무	128	토목경력감리원의 배치	3
76	감리업무	129	전기분야기술사의 배치	3
77	감리업무	132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1
78	감리업무	150	부정, 허위 제출서류의 처리	6
79	감리업무	150	입찰참가자격 제한	3
80	감리업무	167	부실벌점 부과	11
81	감리업무	167	유사 부실내용을 통한 벌점부과	11
82	감리업무	169	부실벌점 측정기준	11
83	감리업무	17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
84	감리업무	173	수행능력결격사유	3
85	감리업무	175	부정서류 처리	6
86	감리업무	175	입찰참가자격 제한	9
87	감리업무	200	부실벌점적용	11
88	감리업무	200	유사 부실내용을 통한 벌점부과	11
89	감리업무	206	입찰참가자격 제한	11
90	감리업무	208	부정서류 처리	6
91	감리업무	208	입찰참가자격 제한	9
92	감리업무	214	부실벌점 부과	11
93	감리업무	216	부정서류 처리	6
94	감리업무	216	기술자 참여여부에 따른 계약해제	6
95	감리업무	232	부실벌점적용	11
96	감리업무	232	유사 부실내용을 통한 벌점부과	11
97	감리업무	233	부실벌점 측정기준	11
98	협력회사	6	공사 적용 기준	1

〈표 III-4〉의 계속

번호	작업명	업무규정 페이지	규제 주제	규제유형
99	협력회사	6	선착공 통보 예외 기준	15
100	협력회사	9	지역 전담체제 운영기준	1
101	협력회사	12	입찰참가자격 제한	3
102	협력회사	15	낙찰예정자 유지 사항	3
103	협력회사	15	교육이수자 목록 제출	15
104	협력회사	16	기능자격 취득 의무	3
105	협력회사	16	장비확보기준 의무	1
106	협력회사	17	야적장 설치 의무	1
107	협력회사	17	옥내 화재보관 시설 설치	1
108	협력회사	17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17
109	협력회사	19	계약보증금납부	2
110	협력회사	20	입찰참가 적격업체 기준	3
111	협력회사	22	선착공 통보 기준	15
112	협력회사	22	협력회사 소속직원 대기	15
113	협력회사	22	추징도급액 재산정 방법	5
114	협력회사	23	공사 감리자 입회 의무	11
115	협력회사	23	설계내역에 따른 시공의무	11
116	협력회사	23	사급자재의 환입처리	5
117	협력회사	23	작업 참여자 자격	3
118	협력회사	23	설계기준, 시공기준 준수 의무	1
119	협력회사	24	민원발생 처리	16
120	협력회사	24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7
121	협력회사	24	보상처리 기준	19
122	협력회사	25	산업안전보건관리 집행내역 제출	17
123	협력회사	25	품질경영계획서 제출	17
124	협력회사	25	환경경영관리계획서 제출	17
125	협력회사	25	시험검사 및 시험성적서 비치	15
126	협력회사	25	적합장비 사용 검사	11
127	협력회사	2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4
128	협력회사	26	공사준공신고서 제출	17
129	협력회사	26	발체대상 시공품질 검사표 제출	17
130	협력회사	27	계약상대자 제재 기준	11
131	협력회사	29	위약벌 납부 기준	20

〈표 III-4〉의 계속

번호	작업명	업무규정 페이지	규제 주제	규제유형
132	협력회사	30	개인별 벌점 부과, 제한 및 취소	6
133	협력회사	30	기능인력 변경내역 통보	17
134	협력회사	31	협력회사 점검 기준	7
135	협력회사	31	불법하도급 제재기준	15
136	협력회사	31	시공통보 중지 기준	19
137	협력회사	31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의무	12
138	협력회사	31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의무	12
139	협력회사	32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의무	12
140	협력회사	32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의무	12
141	협력회사	32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의 제출	15
142	협력회사	33	현장사무소 위치 기준	15
143	표준품셈	3	공사감독원 임명	11
144	표준품셈	3	시공관리책임자 임명 확인	11
145	표준품셈	3	시공관리책임자 교체 공지	15
146	표준품셈	3	시공관리책임자 의무	15
147	표준품셈	3	시공관리책임자계의 제출,인감사용	2
148	표준품셈	4	설계변경도면 제출	17
149	표준품셈	4	설계변경 요청	15
150	표준품셈	4	재시공 통보	15
151	표준품셈	4	대여장비의 불출 및 회수	11
152	표준품셈	4	검수요청명세서의작성및제출	17
153	표준품셈	4	검수물자 보관 요청	15
154	표준품셈	4	공사검사 의무	7
155	표준품셈	5	재시공에 따른 지체사금	20
156	표준품셈	6	하자보수 요구 및 통보	19
157	표준품셈	8	계약 체결 및 정산	17
158	표준품셈	8	잔여작업의 처리	15
159	표준품셈	9	입찰서류	2
160	표준품셈	9	세부설계	2
161	표준품셈	9	공사수급인의 구비서류	2
162	표준품셈	10	실적단가 및 품셈 기준	1
163	표준품셈	11	표준품셈의 시행	1

자료 :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2014. 한국전력공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2014.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2014.

3.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업무

가. 접근방법

- 공공기관 규제(유사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소방산업기술원 사례연구를 수행함
 - 기능적으로 시험/검사/인증의 성격을 가지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소방산업기술원을 선정하여 소방산업기술원 내부 규정을 검토하였음
- 특히, 소방산업기술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소방기기 시험 및 검사 업무 관련 내부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소방용품과 관련한 시험 및 검사업무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업무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기준은 “소방방재청 고시”로 정하고 시험방법은 “소방방재청 승인” 사항임
 - 다만, KFI 인정 및 KFI 인정 제품검사는 소방산업기술원 자체 규정인 “KFI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짐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KFI 인정 등에 관한 규칙”규정임
- 소방산업기술원의 규제 리스트 작성 기준은 행정규제 판단기준⁵⁾을 바탕으로 이해영 외(2010)⁶⁾상의 유사행정규제 유형 분류를 참고하였음

나. 소방산업기술원 규제 리스트

1) 규제 유형 분류 및 종합

- 규정 검토 결과 15건의 유사행정규제가 발굴되었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Ⅲ-5>와 같음

5) 국무총리실, 『행정규제 판단기준』, 2010

6) 이해영 외, 『공공기관 유사 행정 규제 정비방안』, 국무총리실, 2010, pp.24

〈표 III-5〉 소방산업기술원: 규제 유형 분류

규제분류	유형		관련조항	건(%)		
권리 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기준설정	-		
			사전제출 서류	· 제5조 제1항 · 제5조의3 제2항 · 제13조의2 제1항	3 (20)	
			자격조건	· 제5조의2 제1항 · 제5조의3 제1항	2 (13.3)	
			평가인증	· 제3조의 제1항 (KF 인정) 및 별표 1	1 (6.7)	
		허가	-			
	사후	취소·철회	· 제10조 제1항 · 제14조의5 제1항	2 (13.3)		
		검사	-			
	사업내용 제한	사전	가격설정	-		
		사후	권리제한	· 제9조 (조건부 인정)	1 (6.7)	
			이용제한	· 제10조 제3항 · 제13조의2 제3항 · 제13조의2 제4항	3 (20)	
관리감독	-					
의무 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교육	-		
			금지	-		
			신고	-		
			행위의무	-		
	사후	보고	· 제5조의3 제6항	1 (6.7)		
		자료제출	-			
	금전적 의무	사후	사전	보험	-	
			책임	-		
			부가요금	-		
			부담금	· 제29조 제5항	1 (6.7)	
수수료	· 제29조 제4항(현금 납부)	1 (6.7)				

자료: 소방산업기술원, 『KF 인정 등에 관한 규칙』, 2014

- 유형별로 보면, 사전제출서류, 자격조건, 평가인증(인정), 취소/철회, 권리제한, 이용제한, 보고, 부담금, 수수료 유형의 규제가 존재함
- 사전제출서류(20%) 및 이용제한(20%) 규제가 가장 많았으며, 자격조건(13.3%), 취소/철회 규제(13.3%)가 많았음
- 실질적인 하위 규제 '정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인정'이 1건 있었으며, 기존 분류에 의한다면 평가인증에 속함

2) 유형별 규제 사례⁷⁾

□ 사전제출 서류

- 일반적인 신청서 제출은 포함시키지 않음

제5조(KFI 인정의 신청) ① KFI 인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KFI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비용 납부증명서, 시료와 함께 기술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KFI 인정된 제품을 별표1-2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청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기술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무정형적인 것은 생략한다) 및 명세서
2.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3. 시험시설 명세서(제품을 타 제조사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로서 위탁생산자의 시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생산자의 시험시설명세서와 시험시설사용계약 서류(2004. 8. 9 신설))
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설비로 구성되는 품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KFI 인정시험 생략 증빙자료(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미

7)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규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

KFI 인정을 받은 제품에 사용중인 동일부품 및 형상 등에 관한 명세서를 포함한다)

6. ISO 9001인증서(구조공작소방자동차, 구급소방자동차, 배연소방자동차, 조연소방자동차, 소방펌프자동차, 물탱크소방펌프자동차, 화학소방펌프자동차, 고가사다리소방펌프자동차, 굴절사다리(탑)소방자동차, 무인방수탑소방자동차에 한함) 및 구조해석관련자료(구조공작소방자동차, 고가사다리소방자동차, 굴절사다리(탑)소방자동차, 무인방수탑소방자동차의 사다리와 바스켓에 한함)(신설 13.11.15)
7. 기타 관련 자료

제5조의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KFI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이력표와 전문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2.2.3 신설)

제13조의2(품질제품검사의 신청) ①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KFI 인정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KFI 인정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3.6.3>

1. 일반현황
2. 대표자서약서
3. 주요 인력현황
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 품목에 한함)
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 품목에 한함)
6. 품질매뉴얼
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8. 합격표시관리절차서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자격조건 제한

제5조의2(시험시설기준 및 심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FI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KFI 인정 대상 별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로서 위탁생산자가 별표 1-3의 규정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신청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의3(전문기술인력 보유기준 및 심사) ①(별표 1 21) 내지 24) 및 33) 내지 38)의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FI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4]의 규정에 적합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12.2.3 신설, 13.11.15.개정)

- 시험/검사/인정 (기존 분류에 의한다면, 평가인증 또는 기준설정)
- 실질적으로 하위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시험 검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제3조(KFI 인정의 대상) KFI인정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및 안전장비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술원 원장이 정하는 품목으로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취소 철회

제10조(KFI 인정의 취소) ①기술원 원장은 KFI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FI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12.12.3〉

1. 부정한 방법으로 KFI 인정, 제품검사를 받은 때〈개정 13.6.3〉
2. KFI 인정 또는 제품검사 합격표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3. 제5조의2 제5항이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의 시정 요청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13.6.3>
4. 타 제조사의 KFI 인정된 제품을 도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확인된 경우(수입품 또는 제조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개발된 제품 등은 제외한다)
5. 타 제조사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확인된 경우(제조사 간에 특허 등의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인정기준이 폐기된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KFI 인정을 취하할 경우
8.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KFI 인정품이라는 표기를 하여 판매한 경우<개정 13.6.3>

제14조의5(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①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하여야 한다.<신설 13.6.3>

□ 권리제한

제9조(조건부 인정) 기술원 원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FI 인정을 할 경우에 그 형식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흠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공업소유권상의 분쟁 기타 특수사정이 예상될 때에는 조건을 붙여 KFI 인정을 할 수 있다.

□ 이용 제한

제10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FI 인정이 취소된 제품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에는 다시 당해 제품의 KFI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2 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6-6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I) 또는 (II)를 선택하고 제3조에서 규정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제품(단,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의 제품은 제외한다)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신설 13.6.3〉

④ 최초의 품질제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14조의 5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3.6.3〉

□ 보고

제5조의 3 ⑥ 전문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보유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기술원에 알려야 하며, 변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완료하여야 한다(12.2.3 신설)

□ 수수료 및 부담금

-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의 납부 형태, 방법, 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규제로 볼 수 없으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행정규제로 봄

제29조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총금액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의3 제5항에 따라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되 기술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항공임, 숙박비, 식비를 합한 금액을 기술원에 수납한다. 다만, 숙박비는 국가간의 이동일을 제외하고 1일을 기준으로 하며, 항공편·숙박·식사를 신청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13.6.3〉

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사례분석 결과

- 공공기관 규제(유사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소방산업기술원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전 자료 제출, 자격 요건, 이용제한, 보고 등의 규제가 존재하였음
 - 기능적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속하는 소방산업기술원의 경우, 상당수의 업무는 시행세칙 또는 고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내부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는 KFI 인정에 관한 것이었음
 - 내부 규정 분석에 의하면, 사전 자료 제출, 자격 요건, 이용제한, 보고, 수수료 등의 규제가 존재하였음
- 분석결과를 볼 때, 시험 검사 기관 유형의 공공기관 규제 개선은 자체적인 규제 개선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규제 유형이나 내용들을 볼 때, 모든 규제를 중앙에서 등록 관리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실질적 하위 규제 정책에 해당하는 KFI 인정 대상을 정하는 규정(1건)처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 등록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즉,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민간인에게 공개하고, 공공기관 내부에 자체 규정개정 검토시 규제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규정 검토 과정에서 규제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예를 들면 명확한 규정인가, 과도한 부담은 아닌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규제적 비규제적 대안)은 없겠는가 등을 고려하여 제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규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리라 봄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사업

가. 접근방법

- 공공기관 규제(유사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LH에서 선정한 규제에 대한 성격 분석을 수행함
 - LH 공사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각 사업이 건축, 보상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각 사업당 내부 규정이 상당히 다수 존재함
 - 여기에서는 LH 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규제개혁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72건에 대해 규제 분류를 실시
- 규제 분류 유형 구분은 다음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음
 - 이해영 외(2010)은 유사규제를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로 크게 두 범주로 대분류한 후, 아래 <표 Ⅲ-7>과 같은 세부분류틀을 제시함.

<표 Ⅲ-6> LH 유사규제 분류를 위한 분석틀

유 형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기준 설정
			사전제출 서류
			자격 조건
			평가 인증
			허가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후	취소·철회
			검사
	사업내용 제한	사전	가격 설정
			권리 제한
		사후	이용 제한
			관리 감독

〈표 III-6〉의 계속

유 형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교육
			금지
			신고
			행위 의무
		사후	보고
			자료 제출
	금전적 의무	사전	보험
			책임
		사후	부가 요금
			부담금
		수수료	

출처: 이해영 외, 『공공기관 유사 행정 규제 정비방안』, 국무총리실, 2010. p.24

- LH의 규제개혁 중점추진과제 72건을 위의 규제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여 LH 유사규제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나.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규제 분류

- 먼저 LH 공사의 규제개혁 중점 과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I-7〉 LH 규제 유형 분류

규제개혁과제	추진내용	규제분류	유형		
1-1 행정업무정보화 (경영정보처협조)	① 대금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행위 의무
	② 관심지구 알림서비스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③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행위 의무

〈표 III-7〉의 계속

규제개혁과제	추진내용	규제분류	유형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건
1-1 행정업무정보화 (경영정보처협조)	④ 입찰서류내조달시스템전송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⑤ 토지수용확인원 온라인 발급신청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행위 의무
	⑥ 사업지구 도면정보 제공 강화	규제아임			
	⑦ 택지 예정지번 안내	규제아임			
	⑧ 임대주택 온라인 갱신해약 신청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행위 의무
	⑨ 모바일 민원신청	규제아임			
	⑩ 인터넷청약접수완료SMS알림	규제아임			
	⑪ 행정서류 양식 홈페이지 통합게시	규제아임			
	⑫ 유지보수업체 기성업무 전산화	규제아임			
1-2 분양신청금 반환기간 단축	분양신청금7일→3일	규제아임			
1-3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기간연장	직장인을 위한 시간 연장 등	규제아임			
1-4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① 국세 등 납세증명서 제출 간소화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행위 의무
	② 토지명의변경시 제출서류 간소화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행위 의무
	③ 품질확보계획서 제출대상 등 조정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④ 과도한 설계도서 요청 관행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1-5 행정절차 간소화	① 긴급주거지원 절차 개선	규제아임			
	② 일괄입찰시기본설계VE절차생략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③ 일괄입찰시설계설명용PT생략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표 III-7〉의 계속

규제개혁과제	추진내용	규제분류	유형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후
1-5 행정절차 간소화	④ 국민임대 입주자모집 선정방법 간소화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⑤ 임대주택 어린이놀이터 위생점검 완화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후	관리 감독
	⑥ GB도지매도관련재신청절차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⑦ 전세임대 도배장판 기준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⑧ 제한물권 설정주택 매입절차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1-6 갑을관계 개선	① 영향평가 관리구역 시행기준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후	검사
	② 설계용역 하도급 기성 지급시 SMS 알림	규제아님			
2-1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① 정부인증 우수 신기술 도입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평가 인증
	② 산업시설용지 소필지 공급	규제아님			
	③ 물류시설용지 사용승낙 완화	규제아님			
	④ 주택관리업자 보증보험 가입 개선	의무부과	금전적 의무	사전	보험
	⑤ 인쇄업체 등록운영시스템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기준 설정
	⑥ 현상설계공모 발주계획정보 공개	규제아님			
	⑦ 감리용역확대 (협력업체소통강화)	규제아님			
	⑧ 건설관련지침17종간소화	권리제한	사업내용 제한	사후	관리 감독
	⑨ 신기술 상시 공모	규제아님			

〈표 III-7〉의 계속

규제개혁과제	추진내용	규제분류	유형		
2-2 협력업체 애로 해소	① 기술제한서(TP/SOQ)탈락자 설계비보상	규제아님			
	② 현장설계변경 절차 간소화	권리제한	사업내용 제한	사후	관리 감독
	③ 해외도시개발 협회 가입기준 완화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④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규제아님			
	⑤ 영향평가 합리적 용역공정관리 기준 수립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기준 설정
	⑥ 사옥 중개알선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규제아님			
	⑦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서류제출기한연장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전 제출 서류
	⑧ 건축설계공모 설계내용 발표대상 확대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⑨ 조경공사 현장기술자 상주기준 명확화	규제아님			
	2-3 과도한 용역 참가제한 개선	① 부실공사 등에 대한 제재조치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② 아파트 감리용역 계약간수 제한 폐지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2-4 공공기관 독점영역 공유	① 사업방식 다각화 추진	규제아님			
	② 지적측량용역 민간업체 차별 개선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3-1 분양주택 1층배정 대상자 확대	다자녀자, 국가유공자등 확대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3-2 불합리한 약관 개정	주택분양계약서 불합리한 약관 정비	권리제한	사업내용 제한	사후	관리 제한
3-3 공공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제한 완화	의무부과	행위적 의무	사전	행위 의무
3-4 미분양 공공주택 공급조건 완화	무주택자에게 1년이상 공급조건 완화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3-5 현상설계공모 설계규제 개선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	규제아님			

〈표 III-7〉의 계속

규제개혁과제	추진내용	규제분류	유형		
			사업수행 여부	사전	사후
4-1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	① 전세임대 자격탈락자 유예기간 마련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②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규제아님			
	③ 전세임대 전용 콜센터 운영	규제아님			
	④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례화	규제아님			
	⑤ 주거급여 조사기관 직권 주거상향 지원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⑥ 대학생전세임대 적기 입주 지원	규제아님			
4-2 분양주택 예비입주자 순위 게시	예비입주자 순위방 개설, 변동사항 게시	규제아님			
4-3 분양정보안내 모바일서비스 강화	사이버 견본 주택, 사업지구 정보 등 제공	규제아님			
4-4 이주대책자 적격상속인 범위 확대	이주대책대상자 확정 전 상속 확대	규제아님			
4-5 통계치 보상단가 공시	주거이전비, 분묘보상비등단가게시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기준 설정
4-6 GB토지 매수조건 완화	불법형질변경 토지 원상복구시 매수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자격 조건
5-1 KOSHA 18001 인증업체 혜택부여	안전관리 역량우수 업체 입찰혜택 부여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평가 인증
5-2 안전 핫라인 운영	위험인자시현장근로자나신고	규제아님			
5-3 직접구매제도 개선	안전관련 물품 직접구매제도 개선	규제아님			
5-4 생활안전 강화	① TV활용안전시설물사용방법교육	권리제한	사업내용 제한	사후	관리 감독
	②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설계기준 강화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평가 인증
	③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 제도	권리제한	사업수행 여부	사전	평가 인증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 위 규제 분류를 각 규제별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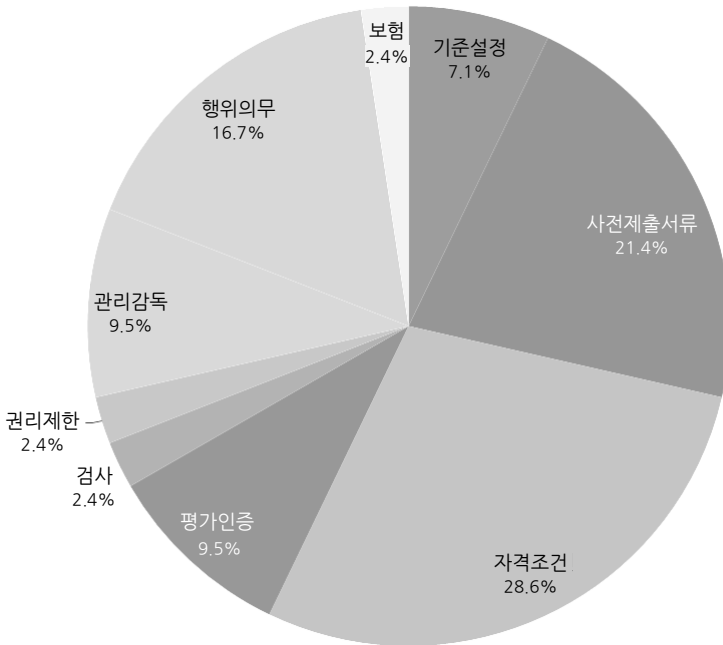
〈표 III-8〉 LH 규제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분류		건수	비중		
권리제한	사업수행여부	사전	기준설정	3	7.1%
		사전	사전제출서류	9	21.4%
			자격조건	12	28.6%
			평가인증	4	9.5%
			허가	0	0.0%
	사후	취소·철회	0	0.0%	
		검사	1	2.4%	
		사업내용제한	사전	가격설정	0
	사후		권리제한	1	2.4%
			이용제한	0	0.0%
			관리감독	4	9.5%
	의무부과	행위적의무	사전	교육	0
사전			금지	0	0.0%
			신고	0	0.0%
			행위적의무	7	16.7%
사후		보고	0	0.0%	
		자료제출	0	0.0%	
금전적의무		사전	보험	1	2.4%
		사후	책임	0	0.0%
			부가요금	0	0.0%
			부담금	0	0.0%
			수수료	0	0.0%
합계		42	10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 LH의 규제개혁 중점추진과제 72건 중 42건이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30건은 규제로 보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음
- 전체 규제의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자격조건 규제 유형이 전체 42건 중 12건으로 전체 2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사전제출서류 규제 유형이 9건으로 2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위의무 규제가 7건으로 1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평가인증과 관리감독 규제 유형의 경우 각 4건으로 9.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기준설정 규제 유형은 3건으로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검사, 권리제한, 보험 규제 유형이 각각 1건으로 2.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I-2] LH 전체 규제 세부유형별 비중(0% 제외)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다.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특성

1) 규제 분류별 건수 및 비중

- 먼저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분류에 의해 구분된 규제 건수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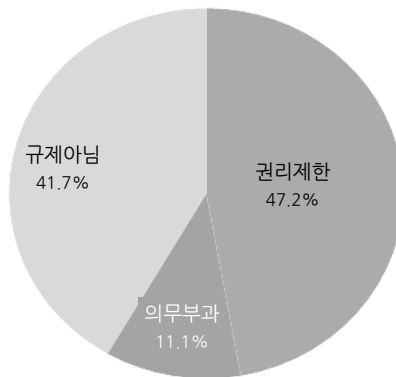
〈표 III-9〉 LH 규제 분류별 건수 및 비중

구분	건수	비중
권리제한	34	81.0%
의무부과	8	19.0%
전체	42	10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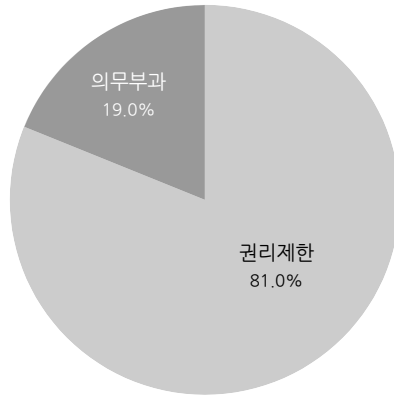
- 규제분류별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권리제한의 경우 전체 42건의 규제 중 34건으로, 81%의 비중을 보였고, 의무부과의 경우 전체 42건 중 8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음

[그림 III-3] LH 전체 규제 유형 분류 비중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그림 III-4] LH 전체 규제 유형 분류 비중(규제 아닌 것 제외)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2) 세부 기준별 건수 및 비중

-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의 세부 기준별로 살펴본 규제 비중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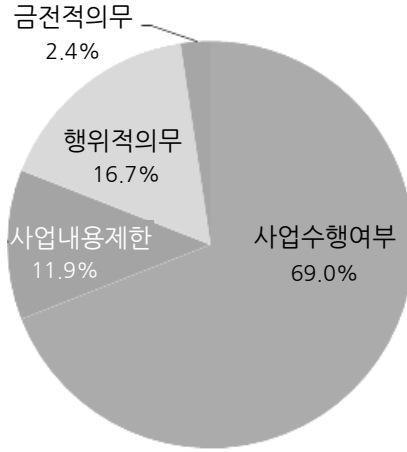
〈표 III-10〉 LH 규제 유형별 건수 및 비중

분류		건수	비중
권리제한	사업수행여부	29	69.0%
	사업내용제한	5	11.9%
의무부과	행위적의무	7	16.7%
	금전적의무	1	2.4%
합계		42	10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의 세부 기준별로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수행 여부 규제 유형의 경우 전체 42건의 규제 중 29건,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다음으로는 행위적 의무 규제 유형이 7건으로 16.7%의 비중을 보였음. 사업내용제한 규제 유형이 5건으로 11.9%를 차지했으며, 금전적 의무의 규제유형이 1건으로 2.4%의 비중을 보임

[그림 III-5] LH 규제 유형별 비중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3) 사전 사후 기준별 건수 및 비중

○ 사전, 사후를 기준으로 살펴본 규제 분류는 다음과 같음

〈표 III-11〉 LH 사전·사후 규제별 건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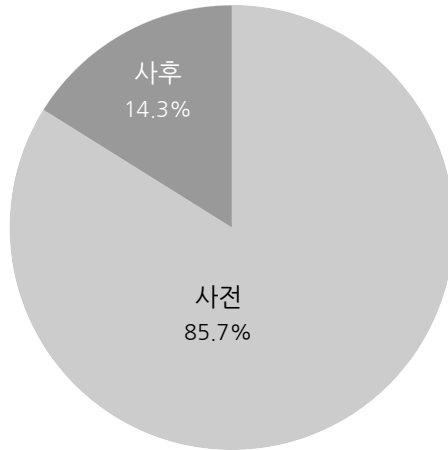
분류		건수	비중
권리제한	사전	28	66.7%
	사후	6	14.3%
의무부과	사전	8	19.0%
	사후	0	0.0%
합계		42	10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 전체 규제에 대해 사전·사후 규제 유형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권리제한에서의 사전 규제유형이 전체 42건 중 28건, 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다음으로는 의무부과에서의 사전 규제 유형으로 8건을 차지해 19%의 비중을 보였음. 다음으로는 권리제한에서의 사후규제 유형으로 6건, 14.3%의 비중을 나타냈음

- 결국 전체에서 14.3%가 사후규제였으며, 나머지 85.7%는 사전규제임.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I-6] LH 전체 규제 중 사전·사후 비중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4) 권리제한 세부유형별 규제

- 권리 제한 세부유형별 규제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12> LH 규제 권리제한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분류			건수	비중	
권리제한	사업수행여부	사전	기준설정	3	8.8%
			사전제출서류	9	26.5%
			자격조건	12	35.3%
			평가인증	4	11.8%
			허가	0	0.0%
	사후	취소·철회	0	0.0%	
		검사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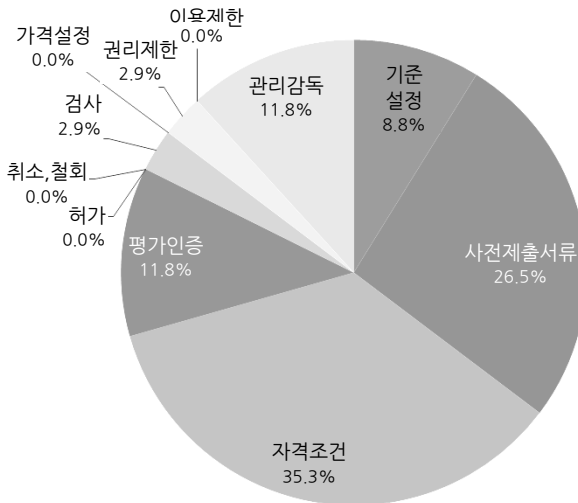
〈표 III-12〉의 계속

분류			건수	비중
권리제한	사업내용제한	사전	0	0.0%
		사후	권리제한	1
	이용제한		0	0.0%
	관리감독		4	11.8%
합계			34	10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 권리제한 규제분류에서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자격조건 규제 유형이 34건 중 12건으로 35.3%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는 사전제출서류 규제 유형이 8건으로 26.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평가인증과 관리감독 규제가 각각 4건으로 11.8%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기준설정 규제 유형의 경우 3건으로 8.8%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와 권리제한 규제 유형이 각각 1건으로 2.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III-7] LH 권리제한 세부유형별 규제 비중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5) 의무부과 세부유형별 규제

○ 의무부과 세부유형별 규제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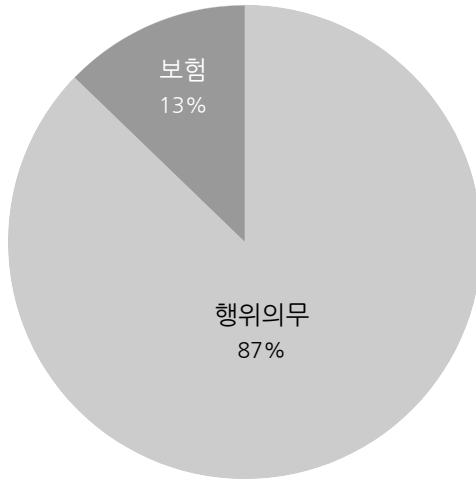
〈표 III-13〉 LH 의무부과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분류				건수	비중
의무부과	행위적의무	사전	교육	0	0.0%
			금지	0	0.0%
			신고	0	0.0%
			행위의무	7	87.5%
		사후	보고	0	0.0%
			자료제출	0	0.0%
	금전적의무	사전	보험	1	12.5%
			사후	책임	0
		부가요금		0	0.0%
		부담금		0	0.0%
수수료		0		0.0%	
합계				8	10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 의무부과 규제분류에서의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행위적의무 규제 유형이 전체 8건 중 7건, 87.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험 규제 유형이 1건으로 12.5%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I-8] LH 의무부과 규제 세부유형별 비중(0% 제외)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라.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특성 및 함의

- LH 규제개혁 과제 중에서 40% 정도는 규제로 보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음
 - 40% 정도의 개혁 과제는 규제라기보다는 민원성 내용이었음
 - 해당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존재하고 이를 개혁했을 경우 보다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였다고 보기는 힘든 내용들임
 - 일반 일선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규제와 불편 사항을 구별하는 데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이 외에 LH 규제개혁 과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규제 유형 중에서 권리 제한에 대한 사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내용 제한보다 사업수행 여부가 보다 강한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행위적 의무가 금전적 의무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는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전규제, 사후규제 구분에서는 사전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전 제출 서류와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것이 대상 규제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규제의 많은 비중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조건과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음

IV. 공공기관 규제 개선 사례분석 결과와 정책적 대안

1. 사례분석 결과

- 4개 공공기관 모두 각각 내부규정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존재함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정부의 위탁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및 사업일수록 정부의 행정규제사항에 해당되거나 행정규제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함
 - 정부의 위탁사무가 많은 경우에 공공기관 규제 개선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규제 개선방식이나 주무부처의 행정규제와 연계해서 개선해야 함⁸⁾
 - 공공기관의 규제 유형이나 내용들을 볼 때,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일관해서 등록 관리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의 규제에 해당하는 내부 규정을 민간인에게 공개하고, 공공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개정 검토 시 규제 개혁의 관점에서 민간전문가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규정 검토 과정에서 규제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예를 들면 명확한 규정인가, 과도한 부담은 아닌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

8)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정비, 핵심규제 개선, 네거티브, 일몰 설정, 규제신문고 개선이라고 보고 있고, 산업통상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추진함. 파이낸셜뉴스, “규제개혁 1년, 창조경제 밑거름이 되다 (1) 산업통상자원부 올 한해 성적표”, 2014. 12. 14 참조

(규제적 비규제적 대안)은 없겠는가 등을 고려하여 제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규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리라 봄

2. 정책적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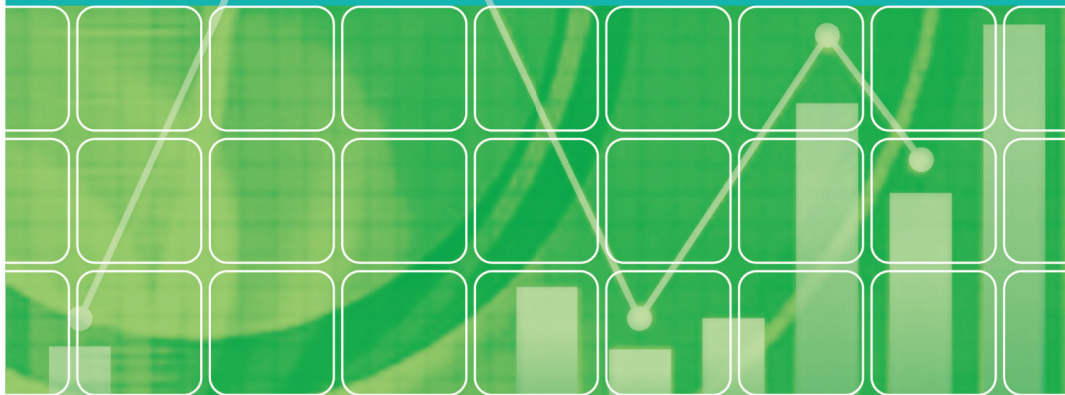
- 공공기관 규제 개념으로 공공기관 내규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총체적 행위를 의미함
 - 기관 자체의 인사·보수·규정 등 내부 행정사항이 아닌 이용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규정, 업무처리 지침, 세부세칙 등
- 공공기관 규제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달리 별도 규제 등록, 규제영향분석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므로 공공기관 규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규제 등록, 관리, 개혁사례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 알리오 등에 공공기관 규제개혁 사례를 공개하고 자체개선 유도
 - 공공기관의 기존 규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굴 또는 등록하고, 매년 개선토록 함
 - 공공기관의 권리제한이거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시 타당성 심사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규제 일몰제 및 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생산하는 것을 방지토록 함
-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알리오에 공공기관 규제개선 사례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코너 신설 필요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행정규제 판단기준』, 2010
-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2014. 3
- 이혁우,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행정논총』 제47권 제3호, 2009
- 이혜영 외, 『공공기관 유사 행정 규제 정비방안』, 국무총리실, 201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2014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제개혁 중점과제』, 2014
-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2014
- 한국전력공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2014
-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2014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인정 등에 관한 규칙』, 2014
-
- 파이낸셜뉴스. “[규제개혁 1년, 창조경제 밑거름이 되다 (1) 산업통상자원부
을 한해 성적표”, 2014. 12. 14
-
- 규제개혁위원회 <https://www.better.go.kr/fz/intro/RrcIntro.jsp>, 검색날짜 :
2014년 7월 1일

공공기관 규제 개혁

발 행 2014년 12월 31일
저 자 라영재
발 행 인 옥동석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 화 (044)414-2114(代)
홈 페이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주)정인&D (02)3486-679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반곡동)
TEL:(044)414-2114(대) www.kipf.re.kr